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정 대응 교총 성과 안내

□ 개정과정 대비표

교육부 고시(초안)_2017.1.23.	교총 추가요청 개정안 2017.2.1(1차)/3.21(2차)	교육부 고시(최종안)_2017.4.13.
1.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활동중인 교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2.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및 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모욕 또는 욕설을 하는 행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 학교나 교사를 비방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고 반복적이고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1. 학생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과도하게 평가과정과 내용에 의견을 개진·항의하거나 평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총활동 성과의 의미

- 학교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교권침해 유형중의 하나인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학교를 비방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명시했다는 점
- 불분명한 ‘교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시켰다는 점

□ 그간의 경과

- 2017.1.23, 교육부에서 고시(안)에 대한 교총의 사전 의견 협조 요청
- 1.25~2.1, 본회 의견서 초안 작성 및 본회 현장교원 검토추진
- 2.1, 교총, 교육부에 1차 건의서 전달
- 3.15, 교육부, 행정고시(안) 게재 : 교총의견 일부 반영
- 3.21, 교총, 교육부에 2차 건의서 전달
- 4.13,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최종안 확정(4.14 공포예정)

※ 붙임. 법령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정의 1부.

○ 법령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교원지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p>「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법 제15조제1항에서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상해, 상해치사, (특수)폭행, 폭행치사 - (특수)협박, 협박 미수범 -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중손괴(손괴를 통한 사람의 상해, 사망), 특수손괴, 경계침범, 미수범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풍속(음행매개, 음화반포, 공연음란)에 관한 죄 -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미수범 - 강간과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살인·치사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 (특수)강도강간, 미수범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 4. <u>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u> 	<p>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